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영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227

발의연월일: 2020. 6. 5.

발 의 자:김영진·백혜련·김진표

이원욱 • 윤관석 • 김경협

인재근 · 최종윤 · 박상혁

최혜영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계획과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고, 회계는 지역자율계정, 지역지원계정,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 구분하고 있음.

그러나 「지방자치법」이 개정되어 서울특별시,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인정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및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와 동일하게 별도의 계정을 만들어 특례시의 발전을 위해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「지방자치법」의 개정에 맞추어 특례시를 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에 추가하고,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에 특례시계정을 신설하여 국가균형발전의 제고 및 특례시의 위상에 걸맞은 재정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(안 제35조의4 신설 등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김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 안」(의안번호 제237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 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 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 중 "특별자치시 및 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 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"을 "특별자치시, 특례시 및 「제주특별자치 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"으로 한다.

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시·군·구의 시장·군수(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과"를 "특례시·시·군·구의 특례시장·시장·군수(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과"로 한다.

제19조제1항 중 "시·군·구별로"를 "특례시·시·군·구별로"로 한다.

제29조의 제목 중 "시·군·구"를 "특례시·시·군·구"로 하고, 같은 조 제 1항 중 "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관할 시·군·구가"를 "특례시장·시장·군수· 구청장은 관할 특례시·시·군·구가"로, "시·군·구"를 "특례시·시·군·구" 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"시·군·구"를 "특례시·시·군·구"로 한다.

제32조 중 "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"를 "제주특별자치도계정, 세종특별자치시계정 및 특례시계정으로"로 한다.

제34조제1항제7호 중 "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

로부터의"를 "제주특별자치도계정, 세종특별자치시계정 및 특례시계정으로부터의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6호 중 "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의"를 "제주특별자치도계정,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의"로 한다.

제35조제1항제7호 중 "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부터의"를 "제주특별자치도계정, 세종특별자치시계정 및 특례시계정으로부터의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15호 중 "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의"를 "제주특별자치도계정,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의"를 "제주특별자치도계정,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의"로 한다.

제35조의2제1항제2호 중 "지역지원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부터의"를 "지역지원계정, 세종특별자치시계정 및 특례시계정으로부터의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"지역지원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의"를 "지역지원계정, 세종특별자치시계정 및 특례시계정으로의"로 한다.

제35조의3제1항제2호 중 "지역지원계정 및 제주특별자치도계정으로부터의"를 "지역지원계정,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특례시계정으로부터의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"지역지원계정 및 제주특별자치도계정으로의"를 "지역지원계정,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특례시계정으로의"를 한다.

제3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5조의4(특례시계정의 세입과 세출) ① 회계의 특례시계정의 세입은

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
- 2. 회계의 지역자율계정, 지역지원계정,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 특별자치시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
- 3. 제37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
- 4. 제45조에 따른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
- 5.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로 귀속되는 수입금
- ② 회계의 특례시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특례시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출연·보조 또는 융자 등
 - 가. 제34조제2항제1호(바목은 제외한다) 및 제7호에 따른 보조 및 지원
 - 나. 제35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, 제9호, 제10호 및 제16호에 따른 출연·보조·융자 및 지원 등
 - 다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
- 2. 제37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 상환
- 회계의 지역자율계정, 지역지원계정,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 특별자치시계정으로의 전출금
- 4. 그 밖에 계정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
-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융자의 대상·조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38조제2항 중 "제34조제2항·제35조제2항 및 제35조의2제2항에"를 "제34조제2항·제35조제2항·제35조의2제2항 및 제35조의4제2항에"로 한다.

제40조제1항 중 "시·군·구별로"를 "특례시·시·군·구별로"로 한다.

제44조제4항 중 "세출예산 및 제35조의3제2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세출예산 상호간의"를 "세출예산, 제35조의3제2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세출예산 및 제35조의4제2항에 따른 특례시계정의 세출예산 상호간의"로 한다.

제48조 중 "제34조제2항·제35조제2항 및 제35조의2제2항에"를 "제34조제2항·제35조제2항·제35조의2제2항 및 제35조의4제2항에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
1. • 1의2. (생 략)	1.・1의2. (현행과 같음)
2. "기초생활권"이란 지역 주민	2
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일	
자리 및 교육·문화·복지·주거·	
안전·환경 등의 생활기반을	
확충하기 위하여 시(특별시,	
광역시, 특별자치시 및 「제	
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	및 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
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	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
제10조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	별법
한다. 이하 같다)·군(광역시의	
군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·구	
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	
가 인근 시·군·구와 협의하여	
설정한 권역을 말한다.	
3. ~ 11. (생 략)	3. ~ 11. (현행과 같음)
제11조(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	제11조(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
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	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
진) ① 시·도지사는 관계 중앙	진) ①
행정기관의 장, 관할 구역의	
시·군·구의 시장·군수(광역시의	특례시·시·군·구의 특례시장·시

군수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· 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을 해당 시·도의 지역특화 산업과 해당 광역협력권의 광역협력권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.

- 1. ~ 3. (생략)
- ② ~ ④ (생 략)

제19조(기업 및 대학의 지방이전) 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 도권 중 <u>시·군·구별로</u> 인구과 밀·산업입지·산업집적 등을 고 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재정적·행정적 사항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·③ (생 략)

제29조(<u>시·군·구</u> 지역혁신협의회) 저 ① <u>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관할</u> <u>시·군·구가</u> 추진하는 국가균형 발전시책의 시행 및 지역혁신 등과 관련된 중요 사항의 협 의·조정 등을 위하여 <u>시·군·구</u>

<u>장·군수(광역시의</u> 군수를 포함
한다. 이하 같다)·구청장(자치구
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
<u>과</u>
<u>.</u>
1. ~ 3. (현행과 같음)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데19조(기업 및 대학의 지방이전)
①
특례시·시·군·구별로
· ②·③ (현행과 같음)
세29조(특례시·시·군·구 지역혁신
협의회) ① 특례시장·시장·군
수·구청장은 관할 특례시·시·
군·구가
<u> </u>

지역혁신협의회를 둘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<u>시·군·구</u> 지역 혁신협의회의 구성,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32조(계정의 구분) 회계는 지역 자율계정, 지역지원계정, <u>제주</u> <u>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</u> <u>치시계정으로</u> 구분한다.
- 제34조(지역자율계정의 세입과 세출) ① 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~ 6. (생략)
 - 7. 회계의 지역지원계정, <u>제주</u> 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 <u>자치시계정으로부터의</u> 전입금
 - 8. ~ 12. (생략)
 - ② 회계의 지역자율계정의 세 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~ 5. (생략)
 - 6. 회계의 지역지원계정, <u>제주</u> 6 <u>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</u> <u>자치시계정으로의</u> 전출금

<u>특례시·시·군·구</u>
② <u>특례시·시·군·</u>
<u> </u>
제32조(계정의 구분)
제주
특별자치도계정, 세종특별자치
시계정 및 특례시계정으로
제34조(지역자율계정의 세입과
세출) ①
1. ~ 6. (현행과 같음)
7제주
특별자치도계정, 세종특별자치
시계정 및 특례시계정으로부
<u> 터의</u>
8. ~ 12. (현행과 같음)
②
1. ~ 5. (현행과 같음)
6 <u>제주</u>
특별자치도계정, 세종특별자치
시계전 및 특례시계전으로의-

- 7. (생략)
- ③ (생 략)
- 제35조(지역지원계정의 세입과 제35조(지역지원계정의 세입과 세출) ① 회계의 지역지원계정 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~ 6. (생략)
 - 7. 회계의 지역자율계정, 제주 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 자치시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
 - 8. ~ 12. (생략)
 - ② 회계의 지역지원계정의 세 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~ 14. (생 략)
 - 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 자치시계정으로의 전출금
 - 16. (생략)
 - ③ ④ (생 략)
- 제35조의2(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입과 세출) ① 회계의 제주 특별자치도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(생략)

- 7. (현행과 같음)
- ③ (현행과 같음)
- 세출) ① -----
 - 1. ~ 6. (현행과 같음)
 - 7. ------제주 특별자치도계정, 세종특별자치 시계정 및 특례시계정으로부 터의----
 - 8. ~ 12. (현행과 같음)

 - 1. ~ 14. (현행과 같음)
- 15. 회계의 지역자율계정, 제주 15. -----제주 특별자치도계정, 세종특별자치 시계정 및 특례시계정으로의-
 - 16. (현행과 같음)

- ③ ④ (현행과 같음)
- 제35조의2(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입과 세출) ① -----

 - 1. (현행과 같음)
- 2. 회계의 지역자율계정, 지역 2. -----지역

지원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 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

- 3. ~ 5. (생략)
- ② 회계의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~ 3. (생략)
- 4. 회계의 지역자율계정, <u>지역</u> 지원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 계정으로의 전출금
- 5. (생략)
- ③ (생략)
- 제35조의3(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저 세입과 세출) ① 회계의 세종 특별자치시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(생략)
 - 2. 회계의 지역자율계정, <u>지역</u><u>지원계정 및 제주특별자치도</u><u>계정으로부터의</u> 전입금
 - 3. ~ 5. (생략)
 - ② 회계의 세종특별자치시계정 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· 2. (생략)

지원계정, 세종특별자치시계정	_
및 특례시계정으로부터의	-
3. ~ 5. (현행과 같음)	
②	-
1. ~ 3. (현행과 같음)	
4지역	
~~~ 지원계정, 세종특별자치시계정	_
및 특례시계정으로의	-
5. (현행과 같음)	
③ (현행과 같음)	
제35조의3(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	
세입과 세출) ①	
	_
	-
  1 (혀해과 간은)	-
1. (현행과 같음)	_
1. (현행과 같음) 2지역	-
1. (현행과 같음) 2 <u>지역</u> 지원계정, 제주특별자치도계정	_
1. (현행과 같음) 2지역	_
1. (현행과 같음) 2 <u>지역</u> 지원계정,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특례시계정으로부터의	_
1. (현행과 같음) 2 <u>지역</u> 지원계정,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특례시계정으로부터의 3. ~ 5. (현행과 같음)	_
1. (현행과 같음) 2 <u>지역</u> 지원계정,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특례시계정으로부터의	_
1. (현행과 같음) 2 <u>지역</u> 지원계정,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특례시계정으로부터의 3. ~ 5. (현행과 같음) ②	_
1. (현행과 같음) 2지역 지원계정,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특례시계정으로부터의 3. ~ 5. (현행과 같음) ② 1. · 2. (현행과 같음)	
1. (현행과 같음) 2 <u>지역</u> 지원계정,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특례시계정으로부터의 3. ~ 5. (현행과 같음) ②	

<u>계정으로의</u> 전출금 4. (생 략) ③ (생 략) <신 설> 및 특례시계정으로의-----

- 4. (현행과 같음)
- ③ (현행과 같음)
- 제35조의4(특례시계정의 세입과 세출) ① 회계의 특례시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- 1.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 부터의 전입금
  - 2. 회계의 지역자율계정, 지역지원계정,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
  - 3. 제37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 입금
  - 4. 제45조에 따른 전년도 결산 상 잉여금
  - 5.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로 귀속되는 수입금
  - ② 회계의 특례시계정의 세출 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- 1. 특례시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출연·보조 또는 융자 등

    가. 제34조제2항제1호(바목은 제외한다) 및 제7호에 따른 보조 및 지원
    - 나. 제35조제2항제1호부터 제

제38조(예산편성절차상의 특례) 제38조(예산편성절차상의 특례) ① (생략)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4 ② ------조제2항·제35조제2항 및 제35 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 한 다음 연도의 예산신청서를 작성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

7호까지, 제9호, 제10호 및 제16호에 따른 출연·보조· 융자 및 지원 등

다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업을 제외한 지방 자치단체의 보조사업

- 2. 제37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 입금의 원리금 상환
- 3. 회계의 지역자율계정, 지역 지원계정, 제주특별자치도계 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 로의 전출금
- 4. 그 밖에 계정의 관리와 운영 에 필요한 경비
-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융자의 대상·조건 및 절차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.

- ① (현행과 같음)
- 조제2항·제35조제2항·제35조의2 제2항 및 제35조의4제2항에----

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하여 야 한다.

#### ③ ~ ⑥ (생 략)

제40조(포괄보조금의 지원) ① 정부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율계정의 세출예산을 편성할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각시·도및 시·군·구별로세출예산의 용도를 포괄적으로정한 보조금(이하 "포괄보조금"이라 한다)으로 편성하여 지원한다.

#### ② (생략)

- 제44조(보조금에 대한 다른 법률 의 적용배제) ① ~ ③ (생 략)
  -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35조 제2항에 따른 지역지원계정의 세출예산,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출예산 및 제35조의3제2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세출예산 상호간의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이 끝난 후 집행잔액을 사용할수 없다.

 ③ ~ ⑥ (현행과 같음) 제40조(포괄보조금의 지원) ①	_
특례시·시 군·구별로	- - -
<u>세출</u> 예산, 제35조의3제2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세출예신 및 제35조의4제2항에 따른 특표 시계정의 세출예산 상호간의	<u> </u>

제48조(지역개발사업 등의 소요 재원 변경에 따른 지방자치단 체의 재원 확충) 국가는 회계 의 세출예산으로 지원하는 제3 4조제2항·제35조제2항 및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소요경비의 전액을 부담하는 사업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회계에서 지원하는 경우에는 회계에서 지원하는 경비에 상당하는 「주세법」에 따른 주세를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충에 활용하여야 한다.

제48조(지역개발사업 등의 소	요
재원 변경에 따른 지방자치	단
체의 재원 확충)	
<u>제</u>	34
조제2항·제35조제2항·제35조의	<u> </u>
제2항 및 제35조의4제2항에	
·.	